

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2. 21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2. 22

다. 상 정 일 자 : 제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총무위원회(12. 27) 상정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조치승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규제조항 정비와 신평레포츠 공원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사용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사용신고로 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 (안 제9조 및 제10조)
-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사용기간 중 설치한 부대시설을 사용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우리 구민의 체력단련과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해 설치한 신평레포츠 공원 체육시설을 그 동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주민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조건을 준수토록 하여 불편을 주는 일부 내용을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선하였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5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